EMPLOYEE GUIDEBOOK STORE(DOS)



Employee Lifecycle



Culture

GENUINE We celebrate individuality and passion to be the best version of ourselves.

RESPECT Respect for yourself and each other. Gong cha embraces diversity.

EMPATHY Connect by listening and appreciating different opinions. Everyone is included and heard.

ADVENTUROUS Be bold and go beyond the expected to delight our customers and colleagues.

TEAMWORK Together, we're better. Let's live the GREAT values and have fun.

- GENUINE: We celebrate individually and passion to be the best version of ourselves. 우리는 각자 모두가 스스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 RESPECT: Respect for yourself and each other. Gong cha embraces diversity.

스스로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차는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 EMPATHY: Connect by listening and appreciating different opinions. Everyone is included and heard. 모두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경청하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존중합니다.
- ADVENTUROUS: Be bold and go beyond the expected to delight our customers and colleagues.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예상된 기대치를 넘어 고객과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 TEAMWORK: Together, we're better. Let's live the GREAT values and have fun. 함께함으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GREAT 의 가치를 실천하며 즐겁게 생활하길 소망합니다.



직무 역량 및 개발 STORE MANAGER(DOS)



공통 직무 역량

- 오퍼레이션 스킬
 - (1) SOP 숙지 / 음료 제조
 - (2) 오픈 / 미들 / 마감 등 매장운영 시간 운영
 - (3) 프로모션 제품 및 사이드 메뉴 제조/판매
- 서비스 마인드
 - (1) 고객경험(CX) 관리
 - (2) 제품품질 관리
 - (3) 클레임 및 컴플레인 대응/조치
- 시설관리 및 매장환경 관리
 - (1) 기기장비 관리(음료제조 기기 및 KIOSK/POS)
 - (2) 개인위생 및 매장청결 관리
 - (3) 근무환경 관리 및 관련법령 준수의무
- 인력운영 및 노무 관리
 - (1) 업무스케줄 운영 및 협조
 - (2)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법령 준수의무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DOS 점포관리자(=점장)
 - (1) 진행시기: 분기별 1회 진행_변동
 - (2) 진행방식: 본사 교육장 이론 교육(1일)_세부과목 및 일정은 시점 별 변동
 - (3) Subject(참고예시_1일 교육 일정)
 - 1) Leadership
 - 2) Quarter/Year Review & Plan Introduction
 - 3) 프랜차이즈 운영전략
 - 4) Sales Building_매출&손익 관리
 - 5) Menu Plan Introduction
 - 6) 비상상황 대응_매장 내 사고발생 시 대응 요령
 - 7) 인사노무 관련 교육_직장 내 괴롭힘 방지
 - 8) 고객경험(CX) 관리 현황 Review/Ideation
 - 9) 매장운영관리 Skill-up 교육
- DOS 매니저 교육
 - (1) 진행시기: 입사일 기준 익월 2주차 또는 3주차_대상자 개별 안내
 - (2) 진행방식: 본사 교육장 내 이론 교육(2일) + Final Test

- (3) 기타: E-learning App / 수습기간 내 1:1 매장교육 및 주차별 업무 능력평가(점포관리자, SV)
- (4) Subject
 - 1) Brand / Tea Introduction: Tasting
 - 2) POS & KIOSK 사용법 및 관리
 - 3) Customer eXperience(CX) 교육
 - CUPS Introduction
 - 4) 서비스 교육
 - 커뮤니케이션 스킬
 - 클레임/컴플레인 정의 및 대처방법
 - 실제 사례 Case Study
 - 5) 기기장비 관리 실습(머신 및 음료제조 기기장비)
 - 6) Customizing: 매장용컵 이론 및 실습
 - 7) (Tea, Pearl) BASE 제조
 - 8) 음료 기본 세팅
 - 9) SOP 교육 1(MILK TEA, FRUIT TEA&MIX, ORIGINAL TEA)
 - 10) SOP 교육 2(JEWELRY, SMOOTHIE)
 - 11) Role-playing
 - 12) 마감 업무 교육
- DOS 기간제 사원(PT) 교육
 - (1) 진행시기: 채용 직후 Overview 학습 진행
 - (2) 진행방식: E-learning App을 통한 SOP 학습 및 TEST 합격요건(80점 이상) 충족 시에만 근무시작 가능
- 보수교육 및 SOP 교육 툴(E-Learning App)
 - (1) 진행방식: 공차 E-School App 설치 및 가입 -> 온라인 학습 -> 온라인 TEST -> 전자수료증 확인
 - (2) 기타



- 설치 및 계정안내: 점포관리자/SV 문의
- 지원부서: CS&Training Team

직책의 역할과 책임

매니저



직책:매니저(팀원)

보고: 점포관리자(부재 시 담당SV)

직책의 목적

- 공차 직영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 이익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리더십을 지원한다.
- 글로벌 및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을 실행한다.
- 고객만족, 제품 품질, 시설(설비), 현금 매출 입금 및 직원 복지 정책 등 공차코리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관되게 운영한다.
-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장의 직원들을 개발한다.

주요 업무 및 책임(측정 가능한 책임/기술)

- 품질, 서비스 및 청결의 수준을 최고로 유지한다.
- 회사의 마케팅 노력에 함께 참여한다.
 - (1) 고객 서비스 및 고객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2) 기간제 사원들의 용모, 예의(공손함) 및 제품 추천에 따른 제안판매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 설정된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 매장의 인력 및 제품 원가를 관리한다..
 - (1) 자재, 종이 및 식품류 등 필요한 원재료를 주문한다.
 - (2) 적절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폐기량을 관리한다.
- 제품 제조과정의 수령, 준비, 보관, 포장 및 제공 등 규정된 공차의 제품관리 절차를 따른다.
- 모든 원재료의 각 사용 가능 기한 내에 메뉴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기본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 및 동기부여를 통하여 기간제 사원들의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한다.
- 매장의 장비, 건물, 대지에 대해 일상적인 예방 차원의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여 필요한 경우 수리/보수를 위해 조치한다.
- 승인된 매출 관리 방법에 따라 점포관리자가 작성하는 필수 레포트를 지원한다.
- 기간제 사원(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보유하기 위해 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개인 및 업무성과 등 필요한 정보를 유지/관리한다.
 - (2) 교육 자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개발, 동기부여 및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3)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한다.
- 현금을 포함하여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

세부 역할에 따른 책임사항

- 고객 서비스/제품 제안판매 역할
 - (1) 매장 내 모든 업무 활동 중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한다.
 - (2)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 만족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며, 제품 품질을 체크한다.



(3) 매장의 모든 기간제 사원들에게 고객 서비스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교육 자료/시스템 사용 및 코칭한다..

■ 고객 관계

- (1) 모든 직원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에게도 항상 예의(공손함)를 지키고 대우해야 한다.
- (2) 고객 서비스 타임에 대해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제품 제조와 관련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실행한다.
- (3) 모든 직원들은 제공되는 지정 유니폼을 착용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4) 고객 불만을 처리하고 조치 또는 결정사항을 점포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비용 관리

- (1) 매장에서 발생 가능한 기타 비용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며, 필요 시 점포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2) 원재료 및 소모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속한 기간제 사원들의 인지상태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한다.
- (3) 조명, 조리 및 냉난방 장치의 효율적 활용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원가를 절감한다.

■ 매출 원가

- (1) 배송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수량을 체크한다.
- (2)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품이 필요한 원재료의 정보는 점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적절한 보관, 순환 및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원재료의 손상(부패)을 막고 신선도를 보장한다.
- (4) 필요한 원재료 및 자재의 올바른 양을 계획하고, 원재료의 총 보관량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

■ 제품

- (1) 모든 원재료의 각 사용 가능 기한 내에 메뉴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기본되어야 한다.
- (2) 규정된 공차의 제품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승인된 원재료만을 사용하며,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재고를 유지한다.
- (3) 규정된 절차를 따라 제품을 준비하고 보관한다.
- (4) "선입선출" 순화 방식을 준수한다.

■ 위생

- (1) SV 또는 부서장에 의해 별도로 지시된 것이 아닌 한, 공차의 승인된 청소 용품과 절차만을 사용한다.
- (2) 모든 필요한 청소 용품 및 장비가 항상 이용 가능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 (3) 보건 당국 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어야 한다.

■ 유지보수

- (1) 매장 차원의 유지 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점포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3) 비용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유지보수 기록을 보관하고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한다.

■ 행정업무

- (1) 점포관리자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기적인 보고 레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지원한다..
- (2) 매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안 절차를 준수한다.
- (3) 매장 내 업무와 관련한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인력관리 권한

- (1) 기간제 사원의 교육 현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유/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다.
- (2) 기간제 사원과 매니저들을 개발하고 동기부여한다.
- (3) 교육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시스템을 사용하고, 필요 시 상호 교차 교육(cross-training)이나 재교육을 실시한다.
- (4) 기간제 직원의 퇴사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록과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다.
- (5) 안전 및 보건과 지역 소방 법규에 준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의 규정 및 안전 절차를 따른다.
- (6) 기간제 사원들의 인력관리에 있어 점포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마케팅

- (1) 신제품 및 각종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고,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필요한 결과를 기록한다.
- (2) 중요 변화요인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점포관리자에게 공유/보고한다.
 - 지역 상권의 주요 매출 발생지 (traffic generator)
 - 주요 고객층
 - 고객 소비 형태

■ 기타

(1) 필요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직책의 영향

- 주요 문제들(직책의 기본 목적달성에 있어 민감하게 관련된 가장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
- (1) 회사의 프로그램, 시스템 및 신제품을 위해 시간, 예산 및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스케줄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지원 직책/부서들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책/부서들)
 - (1) 점포관리자 (문제, 지시사항, 지침,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 및 해결)
 - (2) CS&Training (직책별 교육 및 교육 자료 제공)
 - (3) 지원팀: P&C MKT, SCM, Accounting/FP&A, Construction, QA/Legal(규정, 절차, 기술 자문, 특정 지식 등)
- 의사결정권 (직책 권한 내에서의 허용 및 관리 범위 표시)
 -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장의 채용, 관리 및 퇴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조절한다.
 - (2)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따라 매장이 효율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주문 및 승인, 수령 등을 결정한다.
- 연락 (내부/외부와 연락의 형태 및 목적)
 - (1) 내부
 - 수익성 있고, 효율적이며 조화로운 오퍼레이션을 위해 회사 내의 모든 지원 부서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 회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장 직원들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 단위 기준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확인하고, 프로그램과 조치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점포관리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
 - (2) 외부
 - 공급업체와 배송업체, 규제기관, 특별 이익 집단, 고객들.



- 전문적 혹은 기술적 지식/기술 (지식/기술은 현 직책의 기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항)
 - (1) 공차 매니저(DOS)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 (2) 기간제 사원들의 수준에 맟추어 필요한 지식/기술들의 사용을 계획하고 구성하여 이들을 이끌고 관리해야 한다.
 - (3) 협상,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 추가사항

- (1) 주말/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직책이다.
- (2) 이 직책은 현장 실무 실천 방식(Hands-on approach)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지식은 필수이다.
- (3) 매장과 회사의 미팅 등 업무 중에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매장 내 공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옷차림, 말투, 행동 등 다른 직원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직책의 역할과 책임 기간제 사원(PT)



직책: 기간제 사원(PT)

보고: 매니저 및 점포관리자

직책의 목적

- 공차 직영 매장의 오퍼레이션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매출, 이익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글로벌 및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을 실행한다.
- 고객에게 일관된 고객만족, 제품 품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 및 책임(측정 가능한 책임/기술)

- 품질, 서비스 및 청결의 수준을 최고로 유지한다.
- 회사의 마케팅 노력에 함께 참여한다.
 - (1) 고객 서비스 및 고객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2) 기간제 사원들의 용모, 예의(공손함) 및 제품 추천에 따른 제안판매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 설정된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 업무지시에 따라 자재, 종이 및 식품류 등 필요한 원재료를 주문한다.
 - (2)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폐기량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주간 스케줄 계획에 협력한다.
- 제품 제조과정의 수령, 준비, 보관, 포장 및 제공 등 규정된 공차의 제품관리 절차를 따른다.
- 모든 원재료의 각 사용 가능 기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매장의 장비, 건물, 대지에 대해 일상적인 예방 차워의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매장운영 지시에 따라 협력한다.
- 안전한 매장 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의 업무지시에 따른다.
- 현금을 포함하여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매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며, 점장에게 보고한다.
- 매장 내 업무와 관련한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세부 역할에 따른 책임사항

- 고객 서비스/제품 제안판매 역할
 - (1) 매장 내 모든 업무 활동 중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 만족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며, 제품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매출증대
 - (1)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매출증대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한다.
- 고객관계
 - (1) 모든 직원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에게도 항상 예의(공손함)를 지키고 대우해야 한다.



- (2) 고객 서비스 타임에 대해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제품 제조와 관련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실행한다.
- (3) 모든 직원들은 제공되는 지정 유니폼을 착용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4) 고객 불만을 처리하고 조치 또는 진행상황을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에게 보고한다.

■ 비용 관리

- (1) 원재료 및 소모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 (2) 조명, 조리 및 냉난방 장치의 효율적 활용 위한 업무지시에 따른다.

■ 제품

- (1) 원재료의 적절한 보관, 순환 및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원재료의 손상(부패)을 막고 신선도를 보장한다.
- (2) 규정된 공차의 제품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승인된 원재료만을 사용하며,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재고를 유지한다.
- (3) 규정된 절차를 따라 제품을 준비하고 보관한다.
- (4) "선입선출" 순환 방식을 준수한다.

■ 위생

- (1) SV 또는 부서장에 의해 별도로 지시된 것이 아닌 한, 공차의 승인된 청소 용품과 절차만을 사용한다.
- (2) 모든 필요한 청소 용품 및 장비가 항상 이용 가능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 (3) 보건 당국 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의 업무지시에 따른다.

■ 유지보수

- (1) 매장 차원의 유지 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포관리자 및 매니저에게 보고한다.

■ 기타

(1) 필요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직책의 영향

- 지원 직책/부서들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책/부서들)
 - (1) 점포관리자 (문제, 지시사항, 지침,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 및 해결)
 - (2) CS&Training (직책별 교육 및 교육 자료 제공)
 - (3) 지원팀: P&C MKT, SCM, Accounting/FP&A, Construction, QA/Legal(규정, 절차, 기술 자문, 특정 지식 등)
- 연락 (내부/외부와 연락의 형태 및 목적)
 - (1) 내부
 - 수익성 있고, 효율적이며 조화로운 오퍼레이션을 위해 회사 내의 모든 지원 부서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소통이 가능하도록 매장 직원들과의 접근 가능한 채널을 유지한다.

■ 추가사항

- (1) 주말/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직책이다.
- (2) 이 직책은 현장 실무 실천 방식(Hands-on approach)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은 필수이다.
- (3) 매장과 회사의 미팅 등 업무 중에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이미지적으로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수습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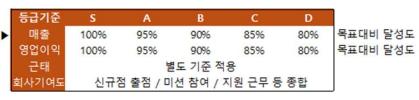
인사평가와 승급



대상: 점포관리자(=점장)

- 인사평가와 승급
 - (1) 방식: 월간 평가 진행 및 연간 종합평가에 따른 호봉의 승급/동결.
 - (2) 평가항목
 - 월간 평가항목: 매출, 영업이익, 근태, 회사기여도
 - 연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산출 기준

연간평가	배점	
월간평가	60	
QSC_품질	5	
QSC_위생	5	
QSC_서비스	5	
QSC_클레임	5	
SV평가	20	J



대상:매니저

- 인사평가와 승급
 - (1) 방식: 연간 종합평가(개인역량중심)에 따른 호봉의 승급/동결.
 - (2) 평가항목구성

연간평가	배점
필기	20
실기_제조	20
QSC_품질	5
QSC_위생	5
QSC_서비스	5
QSC_클레임	5
근태	10
회사기여도	10
점장평가	10
SV평가	10

(3)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등급(S, A, B, C, D, E) 부여



■ 최종등급 별 호봉 승급 기준표.

등급기준			В	C	D	Е
승급호봉	+ 5호봉	+ 4호봉	+ 3호봉	+ 2호봉	+ 1호봉	동결

취업규칙



(하공차코리아		취 업 규 칙					
		개정변호 GCC위한 63		제계정일자		2926-01-91	
স ব	1 4 4		경염기획본	부 점영	지원림		
개정번요	제계정열자	4.8		य ड	9	N.	8 11
				8.8	440	본부장	대표이사
6CK-MB -01	2014,01.01	지정	제정 시절				
				/	/	/	1
ock-H1							
-02	2016,01,01	개정	-1 丸				
				-/	1	/	- /
GCK•MS							
	10.10.0505	가장	-2×t				
				-/-	ſ	-/-	-/-
GCX-MB							
-34	2022.01.01	거용	-3×t				
				1	J	/	- /
				-/-	,	- /	- /

(주)공차코리아 취업규칙

제정, 2014.01.01 개정 - 1자, 2016.01.01 개점 • 2자, 2022.01.01 개점 • 8자, 2022.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제)

이 취임규칙은 연공자으리아 사용의 제품 복취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시합을 점합을 목적으로 한다.

지수조(작용법위)

- ① 이 취업규칙(이터 '규칙'이라 된다)은 하공사교칙어(이라 '회사'과 된다)에 군무하는 사용에게 적용한다.
- ② 사원의 축주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험학 또는 이 규칙 이외의 회사구청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참하는 하에 화온다.
- ④ 4주건)4주 예약 근로시 당해 주간)을 결균하여 1주간의 소청근로시간이 15시간 예약점 자는 유급주호텔 등 근로가운영 책용 제외되는 사항은 책용하지 않는다.

제3조(사존의 경의)

- 이 규칙에서 "사람"이라 함은 회사의 근로계약을 제공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게,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
- 이 규칙에서 단시간사원이라 항문 소청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주당 소청근로시간(HO시간)보다 항문 근로자를 말했다.

제4조(차별균지

회사는 사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접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연령, 산양, 사회적 신봉, 출신지역, 출신하고, 본인 임선 출신 또는 병학(成既) 등을 이유로 자념하지 않는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조(지용)

- ①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합사자원석(이력서, 자기소개석) 1종

2.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 © 회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선제해 조건(8모 기 제공 8), 물신지에 흔전에서 지난, 작계 존비속 및 형제자에의 약해 되었 재산 등 체우수성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용청사 등의 자료로 요구에서 일본다.
- ① 다음 작 호텔 1에 제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제용할 수 없으며, 제용 주관도 이러한 사살이 잘 건된 경우에는 그 제용을 취소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병을 받고 그 집합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라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관회자 아니랑 자
- 전략에서 정책되면(또는 정책해고)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법률에 의하여 공단원이 정치 또는 학달된 자
- 4. 본조 ①활의 규정에 다른 제출서류에 하취사실이 발친된 자
- 범정전염병 또는 다른 직원에게 전염될 수 있거나 입무상 자장을 쓸 수 있는 정병을 지닌 자
- 6. 위 각호에 문하는 사용에 의해 사람으로 제품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언접되는 자

제4조(근로계약)

- ① 회사는 체용이 확정된 자꾸 근로지막을 최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나용을 빼당자에게 당확 이 제시한다.
 - 1. 영급
- 2. 소청근로시간, 휴게시간
- 3. 88
- 4. 연자민급휴가
- 5. 전입의 감소 및 중사파이아 알 업무에 관한 사람
-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용에 찬정한다)
- 7. 근로기준히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쿠지에 해당하는 나용
- 6. 근로기준법 제10등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당한다)
- ② 회사는 근로제약을 제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찍은 근로제약서 1약을 근로제약을 제결한 사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동의 학에 이를 해당 사원의 성용 이제 일, 사내 매일 중 전자리 방법으로 송부질 수 있다.



- 1, 임금의 구성함복,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소혈근로시킨, 튀게시킨
- 1. 有型
- 4. 연차유급휴가
- 도 위협의 장소 및 중사하여야 할 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제약기간(기간제사원에 현장한다)

⑤ 회사는 근문개학 제据 시 제1항의 정부 내용을 다신하기 취한 것인을 명확히 밝히면서 취당 내용이 회사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정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면서 해당 내용이 회사된 취업규칙을 교사할 수 있다.

제7폭(수습(사용)기간)

① 신규로 제품한 자는 최조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이내의 기간을 수십시작)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술(사용)기간을 단축하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술(시용)가간 중에는 별도 규정 및 학장에 의해 교여를 멀지 자급할 수 있으며, 수술(시용)가 간 중 또는 건호된 자료서 근무대도, 업무수행능력, 자물, 기능, 건강상대 등에 취재가 있어 사원 으로서 자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는 당히 근로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제1합의 수습기간은 근속면수에 포함하지, 수습을 시작한 남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종균명 음산장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 무

제4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텔 사람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용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원은 회사의 증인 없는 근무장소 이탈 및 업무 제안병위를 하지 않으며, 일은바 적무를 중 실제 스템하였다.
- 3. 사원은 재작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지독한 비밀을 얻수하고 회사기일을

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도 전제

제12조(함정

©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출장 규칙을 따른다.

제13조(선상변동 선교)

사물은 회사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한 받은 경우 또는 주소, 거주지반값, 가족상활 번능 등 기타 신상에 번호이 있을 경우에는 즐거세류를 정위하여 14일 이내에 이를 점 사회 신교하여야 한다.

제14존(접찍 급지)

사원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마그는 재직한 상태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다인에게 고통되어 다 업무에 중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상달근 의무)

사용은 현재지면, 재배, 기타 불가피한 사우로 연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등이라도 회사의 비상물은 원형에 용하여야 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중의

제16종(인사원지)

사료에 대한 인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행함을 행적으로 한다. 다만, 희무와 직금의 성질상 위점이 철요한 경우 그 전반을 적임자에게 위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영향의 종류)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조의 인사명하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다.

- 1. 배치 (서운)
- 2. 승진 (직급을 늦여 원용)
- 1 전염 (보적 변경)
- 4. 전염 (근무지 변경)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4. 사원은 사원으로서 분위를 순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원은 타인의 업무를 방쾌하는 행인, 문료 간의 철화를 여기시키는 인명을 하는 등 직장 내 규율과 정치를 문만하게 하는 영역을 하여서는 더니 된다.
- 6. 사정은 회사에 공학여 사실을 원극하거나 회사의 신용 또는 명례를 손성시키는 연행을 학여 서는 아니 된다.
- 7. 사원은 본 규칙에 위한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사원은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출간, 결간)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략자 출근하여 업무에 정말 준비를 하여 정상하면 업무수밖에 자원이 업도로 하셨어 하다.

② 사원은 시합시작부터 증립시작하지 근로를 제공하여 하며, 청화진 업무는 근로시간 내에 저리해야 한다.

② 절병이나 그 박의 부족이한 사용로 정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더야 한다. 다한, 불기미한 사용로 사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근 당돌에라도 그 사용을 당확히 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리한 절자를 여행하지 아니한 공우 유민결군을 한 경으로 본다.

제14조/지각, 호텔 및 의중)

① 사원은 혈맹 그 박의 부족이한 사용로 지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에 무서의 장 모는 자상값 자에게 열심여 하며, 부족이한 사원으로 사건에 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랑에라도 지제 않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존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직인 용무를 이용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면, 절병이나 그 방의 부독이한 사용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정의 승인을 받아 조의 또는 의출할 수 있다.

⑤ 사용이 지국, 초퇴 모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움직으로 한다.

제11조(공한연명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회사는 사회이 근무시간 중 선거금, 그 박의 공연금을 열차하거나 공상없의 직무를 수덜하기 위하여 열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름 기취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중요으로 처리한다.

⑤ 회사는 제1합의 권리 행사나 공(요)의 직무를 수별하는데 자갈이 없는 넓임 나에서 사원이 집

도 전적 (직용 변경)

6. 파건군무 (1주일 이상 1년 이내의 근무지, 작용 등의 변하

7. 출장, 교육

9. 대기발원 (출근하나 적무에 출시하지는 못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대기)

9. 후적 (근로자에게 규택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근로자에게 규택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정휴업수당을 지금)

10. 예고

11. 정계명명

가. 경고 (잘못을 엉뚱히 경고, 문제)

나. 건책 (시알서를 제술하고 문책)

다. 관봉 (영광을 될정기간 장박) 라. 정희 (발정기간 출근정지)

다. 장계하고 (근무관계 중앙)

12. 用驾驶位

13.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17조2(대기발명)

- ②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 발형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의로 담당직무를 관망할 수 없을 때
- 2. 당당하무를 수영할 능력이 한처리 취족하다고 인정될 때 (건사고과상 연속2회 최하위 고과 를 받았을 때)
- 3. 근무 성적이 국회 불량되거나 근무대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전쟁되는 경우
- 4. 소속사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넓러 현의가 있거나 정찍 이상에 해당한다고 된단되는 문장계사으로 상보위원하여 무의되어 있을 경우
- 6. 중대한 부정, 결상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의 수술 또는 확대성지에 필요한 경우와 증거를 인 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사람의 전환 비치에 있어 인원적제 중으로 여러움이 있다고 안했다는 경우

- 8. 조직자면, 직례변경, 직무에지, 답답입무의 소설,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답답 직무가 없어지 거나 축소된 책
- 5. 기다 집의 및 인사권리상 필요하다고 연정되는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기날래기간에 조치하여야 한다.
- 회사는 대기발청자의 대기발청 사유를 예소하기 위에 사내 사회 교육론경을 실시하여야 하다.
- 2. 다기 발절자는 교육훈련 및 회사의 전체 부여에 적극적으로 중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대기발형 기간 중의 태도 및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보직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대기절성 중인 사용에 대하이는 열 급여에의 73%를 자급한다. 만, 별도의 정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인사형영의 절자)

사용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원자의 결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위용회를 개최하거나 근로 자와 혐의 등의 형자를 거칠 수 있다.

제1절 인사위원회

제19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인사위원첫(이삭 "위울한'리 한다는 대보이사의 열립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보 이사가 임궐하는 자로 중 1% 이내로 구설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 ② 위영회에는 인사당당자 1명을 건사로 준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취원회는 다음 각 모의 사람을 의견한다.

- 1. 사용의 표장에 관한 사람
- 2. 사람의 집게에 관한 사항
- 1. 그 밖에 사용의 인사에 관학이 위명회의 의점이 필요한 사람

제21조(위원회의 소집 및 유영)

⑤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8) 원산 중인 여성 사원이 도성을 보호하거나, 한 4에 여하 또는 소등하고 2학년 이하의 차 네/입성한 자녀를 프랑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당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여에 따른 휴리를 "육아휴작"이라 한다는 1년 이나
- ⑤ 사람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라 "가족"이라 한다.의 절병, 사고, 노점으로 영화에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학 이에 따른 휴식 를 "가족들붉은작이라 한다는 연간 50일 이대, 1회 30일 이상
- 와 사원이 「공직선거법」에 다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물칙별 영기

제24조(휴직영영)

- © 회사는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신사하여 휴직명한 여부를 결정하여 사원에게 동도한 다.
- ②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23조제4호에 제당하는 경우다도 다음 각 호의 어느 저나에 제당하는 경 우리는 휴직성경을 적지 일을 수 있다.
- 1. 육아유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⑤ 회사는 용적사문가 제23조제5표에 해당하는 경우적도 다음 각 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면,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하고 다지는 사단의 조정, 연장군으의 제한 최는 근로시간의 단속·단역에 운영 등 가족을경휴적을 신청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지를 제요를 노측한다.
- 1, 가족들씀휴적을 시작하려는 날의 원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4개월 때만인 경우
- 2. 가족들병휴적을 신청한 사원 외에 가족이 돌본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5. 회사가 작업안장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연역을 제품하기 원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역을 제용하지 못한 경우
- 4. 사회의 가족을분유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문영에 중대한 지장이 존재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제25조(문수사항)

- ① 콘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대해는 지역 앞이 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회사는 사용이 육아휴지하는 경우 고육보험합청이 정박는 육아휴직군의를 받을 수 있도록 등 정시류를 제공하는 중 적극 현조점다.

제26조(박耳)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임시, 감소, 외제 등을 각 위용에게 동보한다.
- ① 취업적는 재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점 과반수의 장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집에에 관한 사랑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장성으로 의접한다.
- 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취행정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라에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윈, 위표에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 위원회의 의견사장이 목정위원에 권한 사항을 의견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견에 참 여항 수 없다.
- ①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월 배자전적 및 승진

제22조(에지, 전착, 승간)

- ① 회사는 사용의 능력, 적설,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해지, 전체, 숨진 등 인사방향을 하여, 사원은 정당한 사용 열이 이를 거두할 수 없다.
- 회사는 제1함에 따른 인사방법을 할 때 합리적인 이용 없이 남녀를 자병하지 아니꾼다.
- 스 제1할에 다른 인사달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다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된다.

제4일 휴적 및 복직

제23조(휴지사은 및 기간)

사원은 다음 작 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재을 원하는 경우 다음 작 참의 구분에 학 본 기간을 고려하여 휴재을 시작하라는 날의 32일 전하지 회사에 휴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점에 따른 휴재 외에는 우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업무 의 절명, 부상, 장력 등으로 평가 요양이 필요한 타 1개월의 병위 나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 ② 병약법에 따른 병약 복우를 따지기 위하여 정접 또는 소집된 경우: 정접 또는 소집기간
- ⑤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단 또는 교육기관 중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 1년의 병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 ① 사원은 취직기간 단료일 7일 전하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직기간의 변장이 필요 한 경우에는 취직기간 단료일 30일 전하지 그 사유를 당시하여 순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제1월 단시의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7일 내에 거22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팀 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이부를 결정하여 사건으로 통모한다.
- ① 문자기간 안로 전에 사존의 문자 사유가 해소되어 증정한 서류를 정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심의하여 복직에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사원을 복제시킬 때에는 경제 건강 동등한 업무에 복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하지, 부 독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자급되는 직무로 복합시키도록 노력 한다.

제27조(단속기간의 개산 등)

- ① 휴재기간은 군속기간에 산업하되, 근로기준접 제2호제1형제4호에 따른 평균함을 산성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② 제23조 제1호 및 제2로에 따른 유지사용로 유지한 기간은 『근로자회작급에보장법』 제8조에 따른 외국금 산명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24조(근로시간)

- ① 근로시간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로요일 부탁 금요일하지 기일을 하고, 이 등 근무일은 필요일부터 금요일하지 5일이며, 대주 토요일은 무 요무무일로 한다. 당, 근로질소가 제작임 사용은 하당 캠프의 열립시간 내에서 개발근로개역 및 근반소개울되어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 1후간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양, 18세 의양인 사회의 경우 1 후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5시간으로 한다.
-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50시까지 8시간으로 했다. 만, 근로장소가 여장인 사원은 해당 참모되 열업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세 및 근무스케울등에 따라 조항할 수 있다.
- 6) 16세 미안 사용의 경우 1일의 근로사간은 휴개사간을 제외하고 1000부터 1800하지 7사간으로 한다. 단, 근로장소가 대장인 사용은 해당 점문의 영업사간 내에서 근무소계출표에 따라 조점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출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자라고 휴가 사용기간이 됩니기 2개월 전에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점하여 사용해게 서면으로 통지할 전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표한 기간이 1년 대한인 사원의 연자육급통기의 사용을 축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포의 조지(이라 '사용속인조지'의 한다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속인조지역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반 인자육급통기에 대하여는 급선으로 보상하지 아니반다.

- 직조 1번의 근로기간이 공사기 3개별 전품 기호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되게 사용하지 많은 휴가열수를 열어주고, 사존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교하도록 서면으로 축구함 고만한 회사가 서면 축구한 후 열성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조 1번의 근로기간이 출나가 1 개별 원용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축구하여야 한다.
- 2. 제1보에 다른 축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축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야 먼저유라 휴가 사용기간이 공나기 1개월 단계자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시간으로 통제할 겠, 다만, 제1호 단시에 따라 축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골나기 10일 전하고 시안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연자용급휴가의 대체)

되사는 사원대교회의 서전함의에 의하여 연자음관휴가들을 걸음하여 특징한 근로일에 사용을 *모* 무시집 수 있다.

제41조(전조사 용기)

회사는 사용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할 수 있다. 경조휴가 무어 사용, 대상, 방법 등은 회 사의 대표자가 별도로 정하는 너에 다른다.

지42조(생리투기)

회사는 여성 사용이 경구하는 경우 및 1일의 무급성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3조(영기)

- ① 회사는 사용이 업무 의 질병부상 등으로 평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호마하지 않 는 병위 내에서 병가를 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금으로 한다.
- ② 상태나 질병 등으로 1주 여상 계속 같은 시에는 결진성사의 진단사를 정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원칙료휴가

②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모는 계의수정 등 난염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라 '난임지료휴가'

- 180 Add 30 II GAO II G 100 A 07 A 70 II A 100 A

- 5. 원신기간이 20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회사는 사용이 출산전투류가 많이 등을 신청할 경우 교용되합법에 따라 출산전투류가 많이 등을 받을 수 있으로 중동시류를 제공하는 등 학국 청조한다.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 열선 중의 여성 사용에게는 인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운 종류의 관료로 건설시킨다.
- ② 회사는 정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사용이 1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산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월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 근로시간이 6시간이 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취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제당 사원의 원군을 삭잡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일상부 등 여성 시즌에게 근로기운별 제65조에 다른 도약상 또는 보건상의 유래위험 한 취증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지46조(테이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① 제사는 열성한 여성 사람이 의자보건을 제10주에 다른 일산부 청기건강전단을 받는데 중요한 사건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함에 따른 건강한단 시간을 이유로 사용의 임금을 삭잡하지 더니된다.

제47조(취하기 근로시간 단축)

- ② 회사는 제23호제1호에 따라 육아류작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류작 다신 근로시간 의 단국(대하 '국어가 근로시간 단국'이라 한다는 신청하는 청유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면, 대체인의 제품이 설가능한 경우, 경상적인 사업 문장에 출대한 자상을 조제하는 경우 등 남녀고 충격품임 시험점 제15조되었게 해당하는 청우에는 그리하지 아니라다.
- ② 회사가 축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에게 그 사용을 시민으로 불분하고 축사휴작을 사용하기 하거나 그 밖의 조자를 불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원의하이라 한다.
- © 회사가 하당 사용에게 죽이기 근로시간 단속을 허용하는 경우 단속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 간 이상이이어 하고 35시간을 날아서는 아니 된다.
- ※ 혹아가 근로시간 단축의 가간은 1년 이나로 한다. 다단, 제22조목4절에 따라 촉악휴목을 선절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25조목4호에 따른 촉악류록 기간 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가간을 가살한 기간 이내로 한다.

- 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요금으로 한다. 다간, 해당 사용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자장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약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난입지로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난입지로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투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단점지르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단점지하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지율
 용 유구함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5조/임산부의 교회)

- ① 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출산 전파 출산 주름 통력에 92일한 번에 둘 여성 자비를 임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주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주에 45일만 번에 둘 여성 자비를 임신한 경우에는 63일) 이상 부여한다.
- ① 당선 중한 이성 사람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접 시험한 제43조제1함이 정하는 사유로 제1 참석 휴가를 청구속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리를 안속하여 45일(한 번에 중 이상 자녀를 임심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휴가 기간 등에 사원이 고용모임법에 따라 지금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역이 그 사원의 출상임급보다 작품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본(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가입법)의 급여와 통상임급의 자역을 지급한다.
- ④ 열심 중인 여성 사용이 유성 또는 사신한 경우로서 제당 사용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초에 따른 유가를 부여한다. 다면, 오자보건함에서 허용되지 않는 연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 유천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천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고 유선 또는 사선한 여성 사람의 임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선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용의 임신기간이 10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② 사원은 육악기 근로시간 단속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더 경우 나누며 사용하는 1회의 기간 은 1개를 이성이 있어야 한다.
- ※ 회사는 사용이 되어가 군도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포험병영에 정착는 되아기 군도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서류를 제공하는 등 작극 캠프한다.

제48조(육약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오건 등)

- ① 회사는 제47호에 따라 옥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용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려하여 적용하는 공우 외에는 옥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소전을 불친하게 하지 아니라다.
- ② 제42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는 회사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① 회사는 제47조에 따라 목여기 근로시간 단역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전 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한, 그 사물이 경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 에서 현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용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사용에 디하여 「근로기든접」제3조제6호에 따른 평균명응을 산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명균 산량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육아홍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사용은 제28조의 제47조에 따라 목에움적이나 목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당병 중 하나를 선택적이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은 목대휴지를 2회에 원점하여 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일단 물인 여성 사용이 요 성보호를 찍혀여 목이유처음 사용한 횟수는 목이유처음 나는데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반다.
- 2. 사용은 목하기 근로사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 간은 3개월(근로저막기간의 안로로 3개월이상 근로사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제막기간을 말한다!이상이 되어야 된다.

제50조(육아시간)

설투 1년 미란의 이용이 있는 여성 사원의 결구가 있는 경우 제26조의 휴게시간 의에 1월 2회 각 30분의 응로 수중시간을 준다.

제51조(가족들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회사는 사용이 다음 각 초의 어느 아나에 배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에 싸움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조대하는 경우 등 남이고용관동병 시행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나라다.
-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행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쏠보기 위한 경우

2. 사원 자신의 질템이나 사고로 입한 부상 등의 사무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3.55세 이상의 사원이 문화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4. 사용의 학원을 위한 경우

①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동보 하고 종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혐의하여 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용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자시의 어느 하나에 박 당하는 사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주가로 2년의 병위 전에서 근로시간 단족의 기간을 연 장말 수 있다.

©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용에게 제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유를 학여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화 같은 영우 또는 같은 수준의 임공을 지금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야 한다.

제51조의2(가족등본휴가)

- ② 사원은 조무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네 또는 손자네(이쪽 '가죽'이라 한다)의 절병. 사고, 노령으로 연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경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족등분휴가' 기간은 연간 최정 10일(본 규칙 제51조1등1호에 따라 가족들분휴가 기간이 연광되는 경우 20일 「현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가족등봉휴가 기간은 가족등봉휴적 기간에 포칭된다.
- 가속등병휴가'의 경우 사원에 경구한 시기에 가속들병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에 중 대한 지장을 조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혐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의3(박무자중산휴가)

회사는 사원의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한다.

- ② 배우자의 출산휴가:10일
- ② 제1합에 작은 휴가기간 내 휴일 첫 휴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점에 정한 급역에 문 대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에 의한다. 단, 상여궁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되여 지급한다.

⑤ 지급일 기준 휴식자 및 계속군보 3개월 대한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소 배우자 출산호가는 1회에 전칭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타

① 회사의 귀핵사우로 휴염하는 경우에는 휴인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균의 100분 70의 수당

을 지급한다. 다단, 평균임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균액이 동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

①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느롱위원회의 승연을 받다

① 회사는 당해인도 영업성과에 다른 경영상 만단으로 뭘 군에 이외에 경영성과군을 지근할 수

② 상여금은 연단위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상여금의 지급적수와 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

- 7. 제고가 설정된 경우
 - ① 제1함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원이 되적일자를 검시한 사직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9장 퇴직, 해고 등

제56조(퇴직 및 퇴직임)

상염금으로 지급한다

제55조(상의금 지급)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회적시킬 수 있다.

- 1. 본인이 회적을 원하는 경우(의원 사직)
 - 사원은 회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적은 사적서를 회적 희망일 1개월 전에 회 사에 제출하다 증언을 얻어야 한다.
 - 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는 경우 근도자가 사직의사를 동보한 날로부터 1개월동안 무단결군으로 처리하여, 이 기간은 평균임공 산평기간에 보험된다.
 - C. 사직서를 제중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대작지 종진의 직무에 성실히 원하며 업무 언제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사망하였을 경우
- A. 정면에 도달하였을 경우
- 4. 근로게약기간이 탄료된 경우
- 5. 휴직기간 단료 후 복직료을 이제물하는 경우

제8장 임 금

제52존/일근의 구성항목)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원에 대한 영급은 기본급 및 연광, 약간, 후일근로수당 등 법령수당으로 구성한다. 사원의 기본급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경력, 자절, 노동강도 등을 나탕으로 회사의 소경근로시간(주휴수 당 또함)에 대하여 색정된 금액으로 한다.

① 제28조의 근로시간을 호크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p2x00-066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54초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제2형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업하는 임금의 병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 은 뭘 동생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제51조(영균의 계산 및 지급생명)

⑤ 원공은 매월 호일부터 열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역월의 10일 사원에게 직접 자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영화의 예공제화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모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설에 지급한다.

① 신규제용, 승진, 전보, 회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신하는 경우에는 방향일을 기준으로 그 월 역을 일찰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회사는 사원이 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장수 공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의영제서를 교

- ④ 회사는 회제원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회제원당에 여성의 원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는 규칙에 의한 임금제권은 3년간 열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전하여 소멸한다.
- 회사는 사용이 다음 각 효의 사용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업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 에 대한 임금융 지급한다.
- 1. 사진 또는 그의 수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정병 또는 재하의 비용에 충당하 는 경우
- 2. 사접 또는 그의 수업에 의학이 생활하는 자의 공인 또는 사랑 시 그 비문에 충급하는 경우
- 3. 사원이 무득여한 사업으로 1주일 이상 귀합하는 경우

- 6.5일 연속 또는 누적 10일 여성 무단경근하는 경우

-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아고 사직원들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던, 회사는 일부의 인수연계를 위하여 사직점을 제출한 날리부터 3/일을 넘지 않는 병원 내에서 되직
- 3. 사망한 날
- 4. 정면에 도달한 날
- 5. 근로계약기간이 단료된 날
- 6. 배고가 실정, 동보된 경우, 배고일

제57조(사직의 원고)

회사는 사원의 취해사용나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하여 사원과 근로전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 직을 경고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제지한 수 있다.

사원이 다운 각 효의 권우와 값에 사회통념상 근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배고할 수 있다

- 1. 신제 또는 정신상 장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연정되는 경우 (되사의 소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 휴적자로서 전당한 사용 없이 무적기간 한국일 후 7일이 전혀알 학제지 목적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집계위절회에서 애고가 결정된 경우
- 4. 기타 제1조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2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하고)

① 사용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배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열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헤고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사원 의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대표에게 하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자지 동보하고 배고회피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형의하여야 된다.

지수주(제고의 계찬)

①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절병의 요앙을 취하여 유럽한 기간과 그 후 30일 중앙은 리고하지 아니전다. 다란, 근로기관점 제84조에 따라 됩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고할 수 있다.

 선진(政策, 산후(政策)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접에 따라 유열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번 이내 목여호적 기간 동안은 여고하지 아니라다.

제61조(제고의 중지)

회사는 사람들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불지한다.

② 회사는 제1청에 따라 학교를 통지하는 집은 학교일으부터 적어도 50일 전에 학교학교를 하거 나, 30일 전에 학교학교를 하지 아니라였을 때하는 50일본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다. 다면, 다음 각 호의 여노 하나에 해당하는 권우에는 고리하지 아니라다.

- 1. 사람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때문인 경우
- 2. 현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이 고의로 사용에 역대한 지장을 초세하거나 재산성 손비를 위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청군의 별표에 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사용자가 제7항에 다른 체고의 제고를 제고사유와 제고시기를 명시되여 시즌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다른 동지를 한 것으로 본다.

科62至(智治)

① 사원의 정면은 안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현자병관재 및 고양자고용축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는 형년되려자가 재고용을 최명할 시 축하세요로 신규 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착감과 현지용급류가들수 제 산을 위한 제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중인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연금의 결명을 중인과 달려올 수 있으.

제10장 회직급여

제63조(회작급이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원칙하는 사원에게 의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원적급이 보장법] 제15존의 파 본 확장금이원위적인금제도를 설정한다.

- 10. 회사의 궁금을 유용하거나 리눅 또는 배형 및 사취행위를 한 자
- 11. 무단결근에 연속 3일 이상이거나 누척하여 5일 이상인 자
- 12. 회사의 기울을 고려로 파손하여 회사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 자
- 19, 회사가 정한 북부규정을 위안한 자
- 14. 직장 내 성취를 행위를 한 자
- 15. 다른 사용 등에 대학이 직장 내 계름형 형위를 쓴 자
- 16. 기타 법명 위한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운간하게 한 자

제66조(등지의 종류)

- ① 사원에 대한 정계의 종류는 다음과 끝다.
-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 2. 진학: 시발서를 받고 문서로 권학했다.
- 3. 컴봉(라파): 1회에 캠규임급 1일본의 2분의 1, 총액은 웹 교이총액의 19분의 1을 조과하지
- 많는 병역의 금액을 감약한다.
- 3. 정작: 중대 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중시하지 못하여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금하지 아니하다.
- 4. 해고: 근로계약을 하지한다.
- © 사용의 취임군의 위한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사용은 동계와 별도로 그 손해 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정치사유에 제당하는 병위가 미수에 그쳤다 행지라도 직장의 질서에 대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는 그 책임을 연할 수 없다. 다면, 정상을 천작하여 정치를 공감할 수 있다.
- 8 사람이 정계들 경우 그 관리 및 경독 체험을 소홀히 한 성급자 및 부서장에 대하여도 중계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부독이한 사유로 병제할 수 없었던 경 우메는 그러하지 아니바다.

제47호(정의성의)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계의경을 위한 회의 7일 전자자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음, 장계대성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치를 꾸 통보한다.
- ② 위원되는 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장자로 및 당사지의 진을 등 증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성의한다. 이 경우, 정기대상자가 위원회에 출력을 원하지 아니하기나 서견단숨을 하였

- ② 회사는 제1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회학교에 보장님』 제4조제1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란이기나, 4학간을 발근하여 1학간의 소청근로사간이 15시간 대한인 사용에 대하여는 회작교에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학생급여행회적인급제도의 가입다상, 가입기간, 부담근 납입수준 및 납입될 등 퇴직인급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견한 사항은 학생급여행회적인급규칙에서 정한다.

제11장 표창 및 장계

利64至(果餐)

-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이나에 배당하는 경우 표정할 수 있다.
- 1. 회사의 업무능률 합상에 현지한 공료가 전쟁된 자
-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 3. 컴퓨수텔 성적이 무수한 자
- 4. 기타 프장의 필요가 던정되는 자
- ② 프랑 대상자 및 프랑의 방법은 위점성률 거쳐 결정한다.

Mark & COM (LO)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격할 수 있다.
- 1. 부정 및 취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 친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덜하여 회사에 지책을 입힌 자
- 3. 회사의 명에 또는 신문에 순상을 입힌 지
- 4. 회사의 영인을 알레하는 연합을 한 자
- 5. 회사의 규물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거 집사를 포한하게 한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통 및 공동을 반출한 자
- 7. 직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작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 a.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폭립이나 현학을 가한 자
- 9. 사내에서 이가 없어 상염취를 하는 자
- 을 매는 벤지; 하단의 진출권도에서 또는 벤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독에 정부하고 서면 신사면으로 전제의점을 할 수 있다.
- 회원회의 회원이 정치대상자와 원목관계에 있거나 그 정치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회원
 그 정치인들에 관여하지 못한다.
- 위원회는 의견 전에 제당사원에게 소영할 기회를 부여한다.
- 위원회는 경제 대상자가 2회에 원제 할릭교구에 불용하거나 소행을 가꾸하는 경우 모는 소명
 보기 하는 의사를 교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정제되렴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통계심의와 핑계의결을 진행하고, 별지4의 통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① 간사는 장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지66조(집계결과 문보)

장계결가통보는 책당 사용에게 낼지5의 장계처분사유 설명시에 의한다.

제60조(재심정치

- ① 정제처부을 받은 사원은 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대 7일 이 내해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제성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제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여 그 절자는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2장 교육

제계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궁중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설시하는 것을 명칭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사건은 근 보통 제공한 것으로 본다. 교육을 고의로 기괴하거나 대단해 하는 집부에는 장계에 관한 규정이 순용된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작무교육을 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자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설정 등을 고려하여 다로 했만다.

제71조(직무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항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고목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 에 성실의 입작에야 한다.

제72조(장에인 인식개선 교육)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장에의 정의 및 장애리림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강애인의 대한 자물리자 및 장당한 편의 자공, 장애인교육숙한 및 작업자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나중 으로 제장 내 장애인 전시개선 교육을 받다.

제73주(개인정보보조교육)

회사는 [개연청보보호법]이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용에 대하여 철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용은 제1함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4조(직장 내 괴용함 형취의 공지)

① 직장 내 괴롭힌 형태만 사람주, 임원, 사용이 직장에서의 지위 모는 전계 등의 부위를 이용하여 압우성 적정점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병으로 생각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광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향임)

회사에서 경지되는 직장 내 괴롭힌 점취는 다음 각 조와 같다

- 1. 신제에 대하여 폭험하거나 청약하는 범위
- 2. 지속•번복적인 육설이나 폭연
- 1 다른 작품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도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다한 소문을 떠뜨리는
- 등 영역를 위손하는 행위
- 4. 컬러잭 이유 없여 칸복적으로 개인 신부용 등 사작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현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형취
- 4. 집단적으로 파물리거나, 정당한 이후 없이 업무의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항원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가간 동안 근로제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전투의 무관한 일을 지시 하기나 근로제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하드릿영안 사키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일는 행원

9. 그 밖에 설무의 적정념원를 넓어 직접에게 신제적 장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함점

지거(조(직장 내 기름집 예약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히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히 예방교육'이라 찬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다.

- ② 직장 내 괴롭힐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여상으로 한다.
- ① 직장 내 의용함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반 같다
- 1. 직장 내 교통원 형위의 정의
- 2. 공지되는 직장 내 그룹임 행위
- 3. 직장 내 교통법 상당점차
- 4. 취하 내 교통일 사건자리절자
- 도 집합 내 계름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준지
- 6. 직장 내 교통성 책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히 이랑을 위한 내용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때망교육의 주요 내용을 형성 계시하거나 사원들이 연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7조(직장 내 지름성 매망•대용 소작)

회사 내 전사무서에 직장 내 괴롭임의 예방 대용 업무를 충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 대용 당당자'과 한다)을 1명 이상 된다.

제78조(사건의 접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을 당성 사실을 함께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변·다음 당당자에게 신고할
 소 인터

☆ 혜생·다음 담당자는 계·함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고통합 발생 시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9조(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기름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기름에 발생 사실을 던지한 경우에는 지배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설시한다.

⑤ 조사는 핵남대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②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②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지와 관련한 대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고청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고청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가 의사에 범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피체자의 보호)

①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지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로가 명령 등 제작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다. 이 경우 대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티다.

② 회사는 적장 내 괴충입이 인정된 경우 지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회자원원, 유근무 가의 영경 등 책임한 요치를 한다.

③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방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지)

사업주는 직장 내 기름됨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집게, 근무감소의 변광 등 필요한 조지를 한다.

지12조(교객의 독인 중에 대한 조치)

② 고객을 용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폭연, 폭쟁 등을 당한 경우 회사는 여당 사람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영단 또는 건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합, 건강장에 관련 지로 및 상당 지원, 고소 및 고향 또는 손에비상 접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지 등을 취한다.

② 회사는 고객용대 사용의 건강장에를 이렇어가 되어야 되면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나를 하고, 고객용대하늘을을 구비하여 고객이 적인 등 부적형한 열등을 하면 을 때 사용이 자신을 보면하기 위하여 어때면 넘어열음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을때 업무 매뉴었과 건강장에 예압 관한 교육 등의 필요한 조지를 하여야 된다.

회사는 사용이 고객의 목면 등으로 인한 피텍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방의 불리한 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03초(직장 내 성화용의 급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석증의 쪽이서는 아니 된다.

지64조(직장 내 성치를 예방교육)

회사는 직장 내 성취를 예약교육을 연 1회 여상 실시된다.

② 사업주 및 사용은 제1합에 따른 성회를 예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성을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프립되어야 한다.

- 1. 직장 내 성의용에 안안 법정
- 2. 직장 내 성의용 발생 시 퍼리철자와 조치기준
- 3. 직장 내 성역용 지제 사원의 그중상당 및 구제였다
- 4. 그 밖에 직장 내 성자를 예약에 필요한 시험

 회사는 설치를 예약교육의 대통을 사용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장소에 힘살 개시하거나 갖추어 무어와 된다.

지하죠(직장 내 설치를 예약지장

① 회사는 직장 내 설명을 혁명자장을 따면하고 사람이 자유통계 열명할 수 있는 결소에 합성 계 시하거나 갖추어 두이와 한다.

② 제1행의 직장 내 성의를 예방지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프랑되어야 한다.

- 제공 대 성성등 관련 상당 및 고등 자리에 필요한 사항
- 2. 직당 내 성의용 조사결차
- 3. 직장 내 성화용 발생 시 피매자 교호였자
- 4 직장 내 성력을 열위자 장계 정치 및 장계 수준
- 5. 그 밖에 직장 내 성질을 이번 및 근지를 취하여 필요한 사람

제66조(작장 내 설리를 말해 시 조치)

① 회사는 직장 내 성의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때해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당 때해사원 등에 대하

이 근무장소의 변경, 유료휴가 명명 등 적절명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용 등 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47조(교객 등에 의한 성적은 맞지

① 회사는 고객 등 점모와 열립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별 과장에서 성적인 언론 등을 통하여 사용에게 설적 굴략값 모는 혐오값 등을 느끼게 막어 먹고 사용이 그로 인한 고훈 예소를 요절할 경우 근무 장소 병원, 비지전환, 요골휴가의 대한 등 작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용이 제1함에 따른 파력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골증한 것
 이유로 하고나 그 밖의 분이익한 주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44조(안전보건관리구정)

① 회사는 사업장의 한편·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호환된 한편보건준리규정 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기나 강해 두고, 이를 사용에게 열리야 한다.

- 1, 인전 보건 관리후시가 그 작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람
-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람
-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람
- 5. 사고 프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안전 보건이 관한 사항
- ② 작 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권리유형에 따라 작 작업량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되어야 한다.
- © 사원은 면전보건군리계학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하죠(안전보건 교육)

해사는 사원의 산업재의 배념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경한 경기교육, 제공 시의 교육, 작업내용 반경 시의 교육, 문에위협 작업에 사용 시 폭발안전 교육 등 산업간건보건별중에 따른 제반 교육 을 실시하여 사원은 이 교육에 성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지44조(집합기계, 기구의 항호조지)

© 사원이 법정권원병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취직을 명 할 수 있다.

제95조(안입안전보건법 축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간인보건법에 따라 산업지에 예정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선체적 제료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책을 예정하고 안된 당 보건을 유지 장건시킨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집에서 정하는 사랑과 그 되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 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렇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지배조(지역보상)

① 사용이 임무상 부성 또는 질병에 걸면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매보실보통법의 의원다.

① 선임재제보상보험병의 작품을 잃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임이 점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7장 기타

제97조(사무인계)

근로자는 후적, 참가라고, 되작 또는 전보 중의 신상변동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답답세휴, 달 건 및 사무게되와 대결사량을 댕기한 사무한계서를 작성하여 상고자에 보고하고 후칭자에게 한제 하여야 하여, 합부연속에 자칭이 없도록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배조(취업군직의 비지)

회사는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지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일반할 수 있도

회사는 문제하거나 위원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문족을 작용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문제 위원 병자를 위한 병호조자를 하여야 하여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자 사람을 온 수하여야 한다.

- 1. 방로조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이가를 받아 여제할 것
-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결한 대체는 지세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세없이 소속부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21조(보호구의 지금 및 학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 위험적업으로부터 보호 반응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여 사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자급하는 보호구를 작용하竿이 한다.

제92조/콜잘안전보건자료의 평성, 비치는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인전보건법 시영규칙 별표 11의 2에서 정하는 최학물을 및 화학물질을 향우한 제례에 대하여는 물장인건보건자료를 하근사용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작업화분속량

- ① 회사는 산업인전보건집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숙정을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1필의 작업환경축정 시 사용대표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사용대표를 입회시킨다.
- 회사는 작업용권육점의 결과를 사용에게 알려주어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간강전단 등 책들인 조치를 받다.

제94종(건강경영)

- 회사는 사람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인건보건별 제45존에서 경하는 바이 다금 매년 1
 회 일반건강인단을 실시하다. 다만, 사무적은 데 2년에 1히 실시하다.
- ② 회사는 산업인전보건법 제45조 및 동생 시행군식 제26조 등이 정하는 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목소,배치진,수시,입시건강건단 등을 실시한다.
- ①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34조2(질병자의 근모제한)

① 사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원원병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의상이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성황을 회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위한 시 회사는 사용에게 관해되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목 한다.

제99조(취임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정취한다. 다윈, 규칙을 몰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에는 등의를 받는다.



제1조(시행합) 이 규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생한다

제2조(중승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노동관계법형 및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규정) 이 급히 이런에 시행된 노동 관병이나 규정은 이 급히이 시행된과 동시에 그 호 이용 성실하여 이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다.

지4도 삭제

4

제1조(시행함) 이 규칙은 2016년 01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함) 이 규칙은 2020년 이월 이임지도 계정 시행한다

4

제1조(시행함) 이 규칙은 2022년 01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EMPLOYEE GUIDEBOOK STORE(DOS)

